

아파트임대업자 집합물건과 타인을 위한 보험

최 병 규*

<차례> _____

- | | |
|---------------------|--------|
| I. 머리말 | IV. 평석 |
| II. 사건개요, 주장사항 및 쟁점 | V. 맺음말 |
| III. 비교법적 고찰 | |
-

주제어: 집합물, 타인을 위한 보험, 집공동체, 고용관계, 임대사업, 목적관련, 임차인 가재도구

<국문초록> 현대사회에서 국민들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화재의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이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아파트 입구의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불이나 아파트에 많은 화재피해를 일으킨 것을 들 수 있다. 그 화재는 오토바이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키를 빼려하자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가열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특정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였다. 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에 대해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재도구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가재도구도 같이 보험에 붙인 타인을 위한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집합물건에 대하여 보험을 들 경우의 특수한 문제점을 국내의 이론과 판례, 독일의 입법례 등을 통해 고찰한다. 아파트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아파트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 화재보험에 임차인의 가재도구도 부보대상으로서 포함이 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 집합물을 보험에 드는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인정된다. 그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일정한 목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인정된다. 즉 가족구성원이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이거나 사용자와 피용자이면서 같이 주거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진정 또는 비진정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를 집공동체로 용어를 바꾸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구에 대해서까지 타인을 위한 보험을 인정할 수는 없다. 즉 독일의 경우에도 집합보험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업자가 보험에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구까지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물보험의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보면 임차인의 가재도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논문접수일(2016.06.07), 심사개시일(2016.06.10), 게재확정일(2016.06.28)

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같이 사는 가족 또는 사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생겨난 제도이기 때문이다.

I. 머리말

사고는 우연히 일어나고 한번 사고가 나면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현대에는 국민들이 특히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화재의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이다. 집합보험이 화재보험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¹⁾ 집합보험²⁾은 복수의 물건 또는 복수의 사람을 집단적으로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가리킨다.³⁾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건이 아파트 입구의 오토바이에서 발생한 사고로 불이나 아파트에 많은 화재피해를 일으킨 것을 들 수 있다. 그 화재는 오토바이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키를 빼려하자 빠지지 않자 라이터로 가열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특정 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아파트였다. 그 임대사업자가 아파트에 대해 화재보험을 들었을 때 자신의 가재도구 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가재도구도 같이 보험에 붙인 타인을 위한 보험⁴⁾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 문제점은 집합보험⁵⁾과 관계된다. 집합보험은 복수의 사람이나 물건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킨다.⁶⁾ 가령 보험계약자가 자기의 집에 있는 가구, 집기 등 모든 물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하여 그 가족이나 사용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을 인정하고 있다.⁷⁾ 집합보험에서는 부보될 물건과 사람의 범위를 일괄하여⁸⁾ 정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

1) 집합보험이 현재에는 화재보험부분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이론적으로 손해보험통칙부분에 규정하였어야 한다는 주장으로는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497쪽 참조.

2) 최병규, “보험법상 집합보험에 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2012, 391쪽.

3)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29쪽.

4) 이에 대해서는 정진욱,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591쪽 참조.

5) 집합보험은 총괄보험과 특정보험으로 구분된다. 총괄보험에서는 창고에 입출고되는 물건은 수시로 비꾸지만 목적의 범위, 단위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부보가 가능하다.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248쪽. 총괄보험을 계속보험이라고 하기도 한다. 장덕조, 「보험법」, 제2판, 법문사, 2015, 276쪽.

6)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27쪽,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402쪽,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548쪽.

7)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281쪽.

8) 집합보험에서는 보험목적의 일부에 관하여 해지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가 그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다.⁹⁾ 이 글에서는 집합물건에 대하여 보험을 들 경우의 특수한 문제점을 국내의 법이론과 판례, 독일의 입법례와 법해석 등을 통하여 점검하고 결론을 내린다.

II. 사건개요, 주장사항 및 쟁점

1. 계약 및 사실의 개요

보험계약의 내용과 사고의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 내용

보험계약자 겸 기명피보험자 : 서○○(○○아파트 건물주 및 임대업자)

보험자: X보험회사

보험종목/담보 : 아파트종합보험/건물, 일반가재, 전기기기 및 시설

보험기간 : 2014. 7. 15. ~ 2015. 7. 15.

(2) 사고 개요

사고는 2015. 1. 10. 오전 9시경 일어났다.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로 지하 1층은 전기·기계실, 지상 1층은 경비실, 지상 2~9층은 주거용 아파트 88세대, 지상 10층은 업무용 오피스텔 4세대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다. ○○아파트 소유주이자 임대업자인 서○○은 건물신축 당시 지상 2~9층 아파트 88세대 전체에 가재도구를 빌트인 형태로 설치하였고, 지상 10층 오피스텔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집기비품을 설치한 후 건물을 임대하였고 6세대는 분양 판매하였다. 서○○은 '13.2.20. 보험기간을 '13.2.20.~'14.2.20.으로 하고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지하 1층 ~ 지상 9층의 건물과 가재도구, 시설에 대하여 X보험회사의 ○○아파트종합보험(이하 "①보험")에, 지상 10층의 건물과 집기비품에 대하여 X보험회사의 ○○기업사랑종합보험(이하 "②보험")에 가입하였고, 상기

동일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지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510쪽.

9)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377쪽.

계약 만료로 '14.7.15. 보험기간을 '14.7.15.~'15.7.15로 하여 위 보험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갱신하였다.

○○아파트 보험계약 현황

상품명	목적물유형	목적물 상세	보험가입금액
① ○○아파트 종합보험	건물(지하1~9층)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층 9층 2,537.24m ² 중 2,221.36m ²	18억원
	일반가재(지하1~9층)	88세대 * 1,500만원	13억2천만원
	전기기기 및 시설(외부변압기)	전기기기 및 시설(외부변압기)	7천만원
② ○○기업 사랑보험	건물(10층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층 10층 2,537.24m ² 중 315.88m ²	3억원
	집기비품(10층 오피스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층 10층 2,537.24m ² 중 315.88m ² 부호내 집기비품 일체 4세대 *1,500만원	7천5백만원

* 화재손해담보에 한함

2015. 1. 10. 오전 9시경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 김○○은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한 후 오토바이 키를 키박스에서 빼려고 하였으나 키가 얼어붙어 빠지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키박스를 가열하여 키를 빼고 건물로 들어간지 약 1분 50여초 만에 오토바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전체로 옮겨붙어 화재사고 발생하였다. 피보험자 서○○은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X보험회사의 ①, ②보험에서 빌트인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금 2억1천5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보험금 10억9천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보험자는 ○○아파트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본건 보험계약의 목적물은 피보험자 서○○ 소유의 가재도구 및 집기비품에 한하고, 임차인 소유의 가재도구 및 집기비품 손해는 본건 보험계약과 무관하므로 보험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하였다.

2015. 12.~2016. 1. ○○아파트 임차인 유○○을 포함한 11명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당초 임차인 총 12명(11명은 지상 2~9층에 거주, 1

명은 지상 10층에 거주)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10층에 거주하는 1명의 가재도구는 ②보험의 약관상 보험목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본건의 분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당사자 주장

(1) 아파트 임차인 주장

아파트 임차인들은 본건 보험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임차인 소유의 가재도구에 대하여도 X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약관 및 보험증권상 보험목적의 범위

본건 ①보험의 약관 'II. 재산손해담보조항, 제24조(보험목적의 범위)'에 의하면 '① 이 약관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건물 등 아래의 물건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가. 아파트로서 각 호(戶), 실(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본건 보험증권에 의하면 (1) 담보위험 : 화재손해담보, 목적물 사항 : 1. 건물(지하1층~9층) 2. 일반가재(지하1층~9층) : 88세대 * 1,500만원 3. 전기기기 및 시설로 기재되어 있었다.

본건 보험약관에서는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아파트 각 호, 실의 수용가재에 대하여 보험목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본건 보험증권에서는 가재도구의 보험목적물 범위를 '88세대'로만 기재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정해두었을 뿐 계약자 서○○가 임차인에게 빌트인으로 제공한 가재도구에 한정하여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88세대'의 각 실에 수용된 임차인들의 가재도구 또한 보험목적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약관 해석의 원칙

약관은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이므로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어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없고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약관의 내용이 해당계약의 내용으로 정해짐에도 계약자 서○○ 및 모집인이 가재도구의 범위를 빌트인으로 한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진술만으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가재도구의 범위를 계약자 소유의 빌트인으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약관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초래하므로 본건 약관 문언상 이해되는 바대로 계약자 소유의 가재도구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가재도구 또한 보험목적물 범위안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런데 X보험회사측에 따르면, 보험사고 직후 서○○는 본인이 건물 임대시 빌트인으로 제공한 가재도구에 대해서만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보상과정에서 임차인 소유 가재에 대해서도 보험목적물로 가입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보험가입금액의 설정

계약자 서○○는 각 세대당 빌트인 가재도구의 평균 보험금액이 300만원 수준임에도 보험가입금액을 1,500만원으로 설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의 보험요율 산정시 건물 구조급수 및 주거형태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세대 내 일부 물건에 대하여만 보험목적물로 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각 세대의 면적과 각 세대에 수용된 가재도구 등을 통상적인 수준에서 고려하였을 때 서○○ 소유의 가재도구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의 가재도구까지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가입금액을 정하였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2) X보험회사 주장

X보험회사는 본건 계약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자 서○○가 빌트인으로 제공한 가재도구에 한하여 보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1) 임차인의 피보험자 여부

화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해 생긴 직접손해를 담보하므로 보험의 목적

을 소유하는 자의 소유자 이익이 피보험이익이 되는데, 본건 계약은 건물 소유자이며 임대업자인 서○○가 본인 소유의 보험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 해당 목적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계약이다. 보통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 등을 계약자로 하여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는 각 세대주로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임대목적으로 지어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매매세대를 제외한 건물의 대부분을 서○○이 소유하면서 본인 소유의 건물 및 가재도구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서○○로 기재하였으므로 본건 계약의 피보험자는 서○○에 한정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아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세대의 임차인 가재도구까지 보험목적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통념상 맞지 않으며 가입할 이유도 없다.

또한 서○○는 본인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임차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실화대물배상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바, 본건 화재보험 계약은 서○○가 본인소유의 재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차인은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약관상 보험목적의 범위

본건 보험약관은 제24조(보험목적의 범위)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의 수용가재를 보험목적물로 하면서 동조 3항을 보면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2. 가재인 경우 :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 소유의 수용가재를 보험목적물로 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까지 보상해줌으로써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대해 주고 있는 조항이고 상법 제686조(집합보험의 목적)에서도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¹⁰⁾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약관조항과 그 의미를 동일시 하고 있다.

10) 이 규정은 집합보험의 경우 목적물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서 독일 구 보험계약법 제85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이다.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425쪽.

3) 보험계약자의 가입의사

계약자 서○○와 본건 계약 모집인은 최초 계약체결 당시 현장 실사를 통해 목적물을 확인하고 서○○가 임대시 제공한 빌트인 가재도구에 대하여만 보험목적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였고 계약 갱신시에도 종전에 체결하였던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 본건과 같이 임차인의 피보험자 지위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유사판례(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3496 판결)에 의하면, “손해보험에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4) 초과보험 가입목적

일반적으로 주택화재보험의 경우 가재도구 가입금액을 1~2천만원으로 충분히 설정하는데 이는 저렴한 보험료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을 실제 보험가액보다 높게 책정하더라도 보험료의 차이가 크지 않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일부보험이 되지 않아 실제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건 계약의 경우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 31억9천만원에 대한 보험료가 262,200원으로 본건 화재사고로 서○○가 입은 재산손해액을 전부 보상하였다. 만약 일부보험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임차인들의 가재도구에 대한 보상책임까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서○○ 및 임차인의 가재도구 손해에 대해 비례보상 되어 오히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서○○의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침해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3. 쟁점사항

본 사안에서는 건물주가 본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X보험회사가 임차인들의 가재도구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본건 보험약관 제24조(보험목적의 범위) 제1항에서 “주택으로 쓰이는 건물의 수용가재”를 보험목적물로 정하고 있는데, 문언상 피보험자의 소유여부를 따지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의 가재도구도 동 보험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임차인도 피보험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이다. 위 조항이 피보험자 소유의 가재도구를 전제로 하여 제3항의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가재는 피보험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는 조항이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문제된다. ‘피보험자 소유의 가재도구에 한한다’는 개별약정 등 별다른 합의표시가 없음에도 보험계약자의 보험목적물 축소가입 의사를 추정하여 약관 및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의 범위를 축소하여 해석할 수 있는 지 여부도 문제이다. 일반적인 주택화재보험의 요율산정기준에 근거할 때 보험가입금액으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된다.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에 의하면,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명백한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동 조항에 의거 본건 타인을 위한 보험이란 내용이 고지된 바 없음에도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가 문제이다.

원래 타인을 위한 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가리킨다(상법 제639조 제1항 본문). 즉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에 의한 수익자가 다른 보험계약이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다른 사람인 보험계약을 말하며, 인보험에서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다른 사람인 보험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되어있는 보험계약을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는 해상보험의 발달시초부터 대리인 또는 중개인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상품소유자의 이익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관행에서 유래한다. 운송업자나 창고업자가 송하인 임차인을 위하여 체결하는 운송보험계약, 창고화재보험계약 등에서 많이 이용한다.

III. 비교법적 고찰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¹¹⁾¹²⁾를 살펴보는 것이 본 사안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¹³⁾ 이에 이곳에서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에 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한다.

1. 독일법의 내용

(1) 규범목적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는 여러 개별물건들을 한꺼번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한 필요성은 개별 물건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이 실재상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있게 된다.¹⁴⁾ 따라서 동조의 척도에 의하면 보험계약에서 개별대상물건을 집합물로 포섭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동시에 그를 통하여 대상물이 자주 교체되는 경우에도 보험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성립역사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 제1항이 변경 없이 인수한¹⁵⁾ 구법 제54조는 독일 보험계약법의 원래의 법문에 기원하고 있다.¹⁶⁾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 제2항은 구법

11) VVG § 89(Versicherung für Inbegriff von Sachen) (1) Eine Versicherung, die für einen Inbegriff von Sachen genommen ist, umfasst die jeweils dem Inbegriff zugehörigen Sachen. (2) Ist die Versicherung für einen Inbegriff von Sachen genommen, erstreckt sie sich auf die Sachen der Personen, mit denen der Versicherungsnehmer bei Eintritt des Schadens in häuslicher Gemeinschaft lebt oder die zu diesem Zeitpunkt in einem Dienstverhältnis zum Versicherungsnehmer stehen und ihre Tätigkeit an dem Ort ausüben, für den die Versicherung gilt. Die Versicherung gilt insoweit als für fremde Rechnung genommen.

12) 독일 보계약법 제89조 집합물에 대한 보험 (1) 집합물에 대하여 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총체에 부속된 물건도 포함된다. (2) 집합물에 대하여 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손해 발생당시 집공동체 안에서 보험계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 또는 같은 시점에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보험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물건에까지 보험은 확대된다. 이 때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본다.

13) 독일의 2007년 보험계약법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는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101쪽 참조.

14)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54, Rdn. 1.

15) Begr. RegE, S. 82.

16)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54, Rdn. 2.

제85조에 상응한다. 그런데 제1항은 현대의 사회관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조정되었다.¹⁷⁾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인정되는 인적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와 가족구성원(Familienangehörige)이 아니라 그와 집공동체(häusliche Gemeinschaft)관계가 존재하면 된다.

(3) 구성요건

사적자치에 근거하여 집합물보험은 물보험이외에 가령 신용보험(Kreditversicherung)에서도 가능하다.¹⁸⁾ 예정보험(독일 보험계약법 제53조¹⁹⁾)에서는 계약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종류로만 표기되는데, 계약성립 이후에는 보험자에게 개개물건을 알리게 된다. 그에 반하여 (진정한)단체보험은 집합물보험과 유사하다.²⁰⁾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²¹⁾

1) 집합물

입법자의 의도에 의하면 목적연결에 의하여 여러 물건을 일반적으로 단일하게 취급되는 경우에는 집합물을 형성한다.²²⁾ 지금까지의 통설은 그에서 더 나아가서 공간적 연관성을 요구하였다.²³⁾ 공간적 관련성은 계속해서 거래관념상 목적결합의 근거로 기능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위물(Einheit)로 취급된다는 점을 판단할 때 고려가 가능하다. 집합물은 현재 그에 속하는 대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계약체결시점에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²⁴⁾ 보험을 여러

17) Berg RegE, S. 82.

18)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 54, Anm. 4.;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München, 2004, § 54, Rdn. 1.

19) 독일 보험계약법 제53조 통지의무(Anmeldepflicht) 계약체결시 피보험이익이 종류로 표기되고 계약의 형성 후 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리기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예정보험),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위험을 개별적으로, 또는 보험자가 합의된 보험료의 산출근거를 지체없이 통지하는 것을 포기했거나 이것이 합의된 경우라면 각각에 대하여 보상승인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20)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54, Rdn. 5.;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 54, Anm. 7.

21) 그런데 유추적용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54, Rdn. 5.

22) Begr RegE, S. 82.

23)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 54, Anm. 9.;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München, 2004, § 54, Rdn. 2.

24) Begr RegE, S. 82.

물건의 복수체(Mehrheit)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집합물로 할 것인지는 해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할 사항이다. 단지 목록을 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합물보험을 거절하기에 충분한 연결점이 되지 못한다. 보험계약자는 집합물보험에서는 해당 계약상 문서작성의무(Dokumentationspflicht)를 부담하기 때문이다.²⁵⁾

집합물에의 소속은 목적결합관계 또는 공간적 결합이 계속적으로 해소됨으로써 끝나게 된다(이탈).²⁶⁾ 공간적인 분리 없는 양도도, 그를 통해 양도담보처럼 보험계약자가 더 이상 유익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 집합물로부터 이탈이 이루어진다.²⁷⁾ 그러나 일시적인 분리는 집합물로부터의 이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피보험 장소와 보호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 집합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는 있다.²⁸⁾ 그 밖에는 피보험물건이 집합물에 속하는 한 보험보호는 유지된다.²⁹⁾ 그렇지만 피보험이익 상실(독일 보험계약법 제 80조³⁰⁾ 제2항)은 집합물의 대상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 비로소 발생한다.³¹⁾ 전체 집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험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³²⁾에 의해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에 반하여 개개의 물건의 양도는 그것이 전체 집합물로부터 분리되고 그 결과로 개개의 물건만 보험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³³⁾ 실 무상 타인소유조항(Fremdeigentumsklausel)이 활용된다. 그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소유가 아닌 물건도 부보된다.³⁴⁾

25)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München, 2004, § 54, Rdn. 5.

26) OLG Hamm, VersR 1975, S. 174.

27) Römer/Langheid, VVG, § 54, Rdn. 3.

28) Römer/Langheid, VVG, § 54, Rdn. 3.

29) OLG Hamm, VersR 1975, S. 174.

30) 독일 보험계약법 제80조(피보험이익의 결여) (1) 피보험이익이 보험개시시점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장래의 사업이나 장래의 다른 이익을 인수한 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자는 적절한 영업수수를 요구할 수 있다. (2) 피보험이익이 보험의 개시 후에 소멸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이익의 소멸을 안 시점까지 보험이 요청되었더라면 청구할 수 있었던 보험료는 보험자에게 귀속한다.

31) BGH, NJW-RR 1997, S. 529.

32) 독일 보험계약법 제95조(보험목적의 양도) (1)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의 양도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이를 소유하는 동안에 보험계약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가 보험계약자 대신에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2)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수 시점에 진행 중인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보험목적의 양수 사실은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주장할 수 있다.

33)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 95, Anm. 35.

34)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 95, Anm. 35.

반대로 물건이 상응하는 목적규정에 의하여 장소적 관련 밑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보험보호의 대상이 된다(소위 편입). 이를 통하여 계속 교체하는 대상물에 대한 부보가 계약당사자의 아무런 행위 없이도 가능하게 된다.

그 경우에 편입되거나 이탈되는 물건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결과 창고보험은 양도담보되는 물건이라든지 소유권 유보하에 공급된 물건의 경우에도 부보대상에 포함이 된다.³⁵⁾

그 한도에서 집합물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독일 보험계약법 제43조³⁶⁾ 이하를 의미하기도 한다.

2) 집공동체 및 사용자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 제2항 제1문은 집합물보험을 보험계약자가 손해발생 시 집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나 이 시점에 고용관계에 있어 보험장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까지 확대시킨다. 그 한도에서 보험보호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 제2항 제2문에 의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인정된다.³⁷⁾ 계약 체결 이후에 그 권역의 사람의 범위가 확대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금액이 조정되지 않는 한, 집합물보험의 일부보험이 된다(독일 보험계약법 제75조).

집공동체라는 개념은 독일 민법 제208조, 제617조, 제618조, 상법 제62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집공동체는 일시적이지 않은 주거공동관계에 있을 때 인정된다.³⁸⁾ 이 경우는 특히 단일한 경제관계(einheitliche Wirtschaftsführung)가 표현이 된 것이다. 그를 인정하는 강력한 증표는 최소한 가구의 일부분 및 공간을 일부 이용하는 것이 된다.³⁹⁾ 다른 징표로는 같은 주소에서 주민등록을 같이하고 있는 것 또는 같은 은행좌로부터 생계를 위한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이다. 개개 주거자가 각각의 방을 따로 쓰는 것은, 비록 각자가 별도의 입구벨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집공동체를 인정하는 데에 반하지 아니한다.⁴⁰⁾ 독일사회

35)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 54, Anm. 2.

36) 독일 보험계약법 제43조(개념정의) (1)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타인을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 타인을 지정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대리인으로서가 아니고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본다. (3)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상황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본다.

37)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85, Rdn. 2.

38)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85, Rdn. 5.

39) OLG Nürnberg, VersR 1959, S. 283.

법전II 제7조 제3a항의 사회보장법적 추정은 최소한 징표적으로라도 포함을 하여 고려하여야 한다.⁴¹⁾ 방문자는, 비록 친척관계에 있어도,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 제2항 제1문에 해당하지 않는다.⁴²⁾

집 공동체관계는 그 구성원이 장기간 부재함으로써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결정적인 것은 되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느냐 여부이다. 또는 최소한 되돌아오는 것이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⁴³⁾ 단순히 질병으로 인하여 또는 휴가로 인하여 짧은 기간 동안 외부에 주거하는 경우는 여전히 집공동체 관계가 인정된다.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일을 일시 다른 곳에서 수행하고 그곳에 방을 빌린 경우이지만 주말에는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⁴⁴⁾ 군대를 가거나, 대체복무를 하거나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즉 그 복무 등을 수행한 후 독립하여 생활할 것이냐 아니냐이다.⁴⁵⁾ 그런데 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몇몇의 약관에서는 그러한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에 복귀하는 것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령 독일 가구보험약관(VHB) 2008, 제7조 제2호).

집공동체 인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척도는 손해발생시점이다.⁴⁶⁾ 독일 입법자는 구법 제85조와는 다르게 가족구성원(Familienangehörige)일 것을 포기하였다. 비진정성의 또는 등록된 사실혼관계(Lebenspartnerschaft)도 포함이 되게 되었다.⁴⁷⁾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에서의 고용관계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활동을 부보된 장소에서 영위하면 인정이 된다(가령 집사, 정원사, 요리사 등).⁴⁸⁾ 입법부의 평가에 의하면 구법 제85조에서 변형의 경우, 즉 고용인이 보험계약자와 집공동체로서 살아야 한다는 경우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2007년 신 보험계약법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⁴⁹⁾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법문언상 사고발생시를 기준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40) BGH, r+s 1986, S. 53.

41) Schirmer, DAR 2007, S. 6.

42) AG Konlenz, VersR1956, S. 149.

43) Martin, D XII, Rdn. 63.

44) BGH, NJW 1962, S. 41.

45) Schimikowski/Brömmelmey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89, Rdn. 22.

46) Begr RegE, S. 82.

47) BGH, VersR 2009, S. 813.

48)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85, Rdn. 5.

49) Begr RegE, S. 82.

(4) 법적 효과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에 의하면 보험사고발생시에 집합물에 속하는 모든 것이 보험보호의 대상이 된다. 각각의 물건에 대한 신고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는 계약에 의하여 서류증빙을 갖추는 것이 요구될 수는 있다.

신가보험에서는 새로이 조달된 또는 새로이 제조된 물건에 대해 청구권이 성립하고, 그리고 집합물을 새로이 조달 또는 제조 및 그 확보, 독일보험계약법 제 93조⁵⁰⁾하는 데 드는 만큼 보험보호가 이루어진다.⁵¹⁾ 일부보험이 존재한 결과 또는 보상제한이 적용됨으로써 전체 손해가 다 전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은 집합물의 모든 물건에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⁵²⁾ 여러 개의 집합물이 독립적으로 부분보된 경우에는 초과보험, 일부보험 및 중복보험의 법리가 각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⁵³⁾ 이렇게 하는 것이 그에 이어서 전체보험금액을 형성하는 것에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⁵⁴⁾

(5) 보험자의 상담의무

집합물에 속하는 목적물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가치가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부보험이나 초과보험이 될 것이다.⁵⁵⁾ 이러한 이유로 2007년 독일 보험계약법 개정 이전에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담해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다.⁵⁶⁾ 그에 위반할 경우 관습법적인 이행책임에 의거하여 책임을 져야하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전보가 적시에 조정된 것처럼 해주어야 한다고 하였다.⁵⁷⁾

50) 독일 보험계약법 제93조(원상회복약관) 보험자가 계약에 따라 보험목적의 원상회복이나 재구입의 경우에 보상의 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이나 재구입이 가능하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우선 요구할 수 있다. 물건이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인하여 적절한 기간 안에 원상회복되지 않거나 재구입할 수 없다면 보험계약자는 물건의 보험가액을 감액하고 보험자로부터 이미 이행된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51) OLG Köln, VersR 1994, S. 932.

52) OLG Bremen, VersR 1978, S. 315.

53)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München, 2004, § 54, Rdn. 9.

54) OLG Köln, VersR 1993, S. 1102.

55) BGH, NJW 1964, S. 245.

56) BGH, NJW 1964, S. 245.

57) BGH, NJW 1964, S. 245.

신법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⁵⁸⁾ 제4항 제1문에 의하여 계약체결 이후에도 그에 대해 구체적 동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한 상담의무는 특히 보험계약자의 전보수요가 변경될 때에는 존재하게 된다.⁵⁹⁾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에 의하여 명확한 규정을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4항 제1문은 보험자에게 있어서 상담의 동기가 존재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그로써 부분적으로는 상담이 보험계약자의 동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된다.⁶⁰⁾ 그런데 이러한 제한된 해석은 법문언에는 흔적이었다.⁶¹⁾ 그리하여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보험보호가 보장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상담을 해주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⁶²⁾ 집합물의 범위에 대해 보험계약기간동안 보험자가 계속 문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대상을 다른 방법으로 보험에 들려고 하는 것을 인지하여 집합물에 변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동기유인의 인지를 긍정하여야 한다.

58)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 (1) 청약이 권유된 보험을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보험계약자의 인적요소와 상황 등에 대하여 특정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희망이나 필요에 따라 질의에 답하여야 하고, 상담비용과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된 보험료와의 적절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특정의 보험에 대하여 해야 할 조인과 관련한 근거 등을 알려주어야 한다. 보험자는 청약이 권유된 보험계약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상담내용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개인으로부터 증개되거나 민법 제312b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원거리 판매인 경우에는 제1문과 제2문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한 조인과 근거 등을 계약의 체결 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텍스트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원하거나 보험자가 잠정적인 보상을 보장한 경우에는 이러한 상담의 내용을 구두로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상담내용을 텍스트형식으로 송부해야 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와 의무보험의 경우 잠정보상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로부터 상담 등의 포기가 보험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시받았다는 것을 포함한 서면상 의사표시로 제1항 및 제2항의 상담 등을 포기할 수 있다. (4) 보험자에게 보험계약자의 문의와 상담에 대한 근거를 인식할 수 있는 한 보험계약체결 후 보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 제1항 제1문에 따른 의무는 지속된다. 보험계약자는 개별의 경우에 따라 서면으로 상담을 포기할 수 있다. (5) 보험자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계약자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제1항에서 제5항은 보험계약법시행법 제10조 제1항 제2문상의 대형위험에 대한 보험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59)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 6, Rdn. 248.

60)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 6, Rdn. 221.

61) Römer, VersR 2006, S. 743.

62) Schimikowski/Brömmelmey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6, Rdn. 37.

보험자가 구체적인 정보의 수요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전보범위를 보험계약자가 추상적으로 문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4항 제1문에 반하여 보험자가 현존하는 일부보험, 초과보험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4항 제1문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책임을 저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5항 제2문의 법문언의 부정적 표현으로 인하여 전환된다. 법적 효과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금액이 새로운 조건에 부합되게 증가하거나 축소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서게 하여야 한다(소위 준 전보[Quasi-Deckung]).⁶³⁾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5항 이외에 관습법적인 이행책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⁶⁴⁾ 비록 독일 보험계약법 제6조 제5항은 외견상 부정적인 이익에 향하여져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보험자의 과책(귀책사유)은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청구권의 기초가 그 효력에 있어서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⁶⁵⁾

(6) 변경가능성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는 원칙적으로 변경가능하다. 따라서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집합물에 속하는 물건만 보험보호가 가능하다고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⁶⁶⁾ 그리고 당사자는 보상금액을 제한하거나 보험보호를 물건이 보험장소에 남아있거나 보험계약자의 보호하에 남아있는 경우로 국한하는 것도 가능하다.⁶⁷⁾ 일시적인 이탈의 경우에 대해서는 가령 가구보험에서(독일 가구보험약관[VHB 2008] 제7조)처럼 외부보험(Außenversicherung)이 적용될 수 있다.⁶⁸⁾ 보험약관이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한, 독일 민법 제307조⁶⁹⁾ 제1항, 제2항 제1호의 내용통제가 적용된다.

63) Dörner/Staudinger, WM 2006, S. 1711.

64) E. Lorenz, in: FS Canaris, S. 772.

65) 다른 견해: Schimikowski/Brömmelmey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 6, Rdn. 56.

66)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 54, Rdn. 10.

67) BGHZ 35, S. 156.

68) OLG Hamm, VersR 2008, S. 678.

(7) 증명책임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시에 해당물건이 집합물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⁷⁰⁾ 역시 사고발생시점에 집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점 및 고용관계가 존재한다는 점(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 제2항 제1문)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⁷¹⁾

2. 독일법의 집합보험에 대한 해석의 특징

독일에서 집합보험은 원래 가족공동체나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그런데 2007년 개정시에는 가족공동체 대신 집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진정 또는 부진정 사실혼관계를 포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도 집합보험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업자가 보험에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 구까지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IV. 평석

우리 법원의 타인을 위한 보험의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독일의 예 등을 통하여 본 사안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된다.

69) 독일 민법 제307조(내용통제) 1) 약관조항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는 효력이 없다. 부당한 불리함은 그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이해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정에 기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2) 어느 조항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때에는 부당한 불리함이 인정된다. 1. 그 조항이 법률상 규정과 달리 정하는 것인 경우에 그 규정의 본질적인 기본사상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때, 또는 2. 계약의 성질상 인정되는 본질적인 권리 또는 의무를 제한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위태로운 때. 3) 제1항, 제2항 및 제308조, 제309조는 법률규정과 다른 내용 또는 그것을 보충하는 내용을 정하는 약관조항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 외의 조항은 제1항 제1문과 결합한 동항 제2문에 의하여 무효일 수 있다. 이는 우리 약관규제법 제6조에 상응하는 내용이다. 일반조항에 대해서는 권오승, 「경제법」, 제9판, 법문사, 2011, 456쪽;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1240쪽;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1112쪽; 신현운, 「경제법」, 제5전정판, 법문사, 2012, 639쪽;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제9판, 세창출판사, 2012, 344쪽;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170쪽 아래; 정호열, 「경제법」, 제4판, 박영사, 2012, 602쪽;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 1237쪽 참조.

70)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 54, Anm. 34.

71)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S. 1973

1. 법원의 타인을 위한 보험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다94141 판결: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등 참조).”

2. 관련 판례

(1) 아내의 팬시점 사건

남편이 아내가 운영하는 팬시점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즉 부산지방법원⁷²⁾의 판결로서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보험금은 보험목적물의 실소유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이 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2001. 1. 2.부터 부산 ○○구 ○○동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 펜시용품 및 잡화 등의 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원고의 남편인 G는 1986년 10월경부터 1998년 5월경까지는 부산 ○○구 ○○동에서 ‘D’라는 상호의 크리스마스용품 제조, 판매점을, 1999년 1월경부터 2001년 5월경까지는 위 C 인근에서 ‘E’라는 상호의 스누피대리점을 각 운영하였으나 그 후부터 현재까지는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이

72) 부산지방법원 2006.5.12. 선고 2005가합13991 판결

다. G는 2002. 12. 31. 피고와 사이에 위 C 내 문구류, 펜시제품, 집기비품 및 내 부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 G, 보험금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2. 12. 31. 16:00부터 2007. 12. 31. 16:00까지로 된 무배당 J 보험계약(이하 '제1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도 2004. 1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및 소유자 원고, 보험금 1억 2천만 원, 보험기간 2004. 11. 18. 16:00부터 2009.11. 18. 16:00까지로 된 무배당 화재보험계약(이하 '제2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05. 1. 9. 21:10경 위 C에서 원인불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이 전소되었다. 위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액 사정 결과 제1보험계약 및 제2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은 각 70,981,543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제2보험계약의 보험금 중 일부인 34,121,271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F는 2005.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05카단000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채권 중 18,282,364원에 관하여 채권기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후 그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보험계약은 G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이므로, 피고는 제1보험계약에 기한 위 보험금 및 제2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물과 위험의 종류만이 정해져 있고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 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을 위한 것인지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C를 직접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던 원고가 위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인 G는 원고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보험계약 체

결 이후 다시 원고가 직접 피고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제2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체결한 제1보험계약은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의 실소유자인 원고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107,841,815원(=제1보험금 70,981,543원+제2보험금 잔액 36,86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05. 7. 15.부터 피고가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5.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건물임차인의 화재보험가입의 경우

건물임차인이 임차하여 음식점을 하면서 보험을 가입한 경우 화재보험을 든 경우 건물부분은 건물소유주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33496 판결:“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보통보험약관의 내용,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자가 보험목적물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 피고 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맺은 특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다. 그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그 판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 중 건물에 관한 부분은 임차인인 원고가 그 소유자를 위하여 체결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관련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상의 보험책임과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소실되는 경우에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까지도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니,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피보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법 제686조의 취지

상법 제686조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가옥 또는 영업장 내에 있는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에 부보한 경우 피보험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는 자기를 위한 화재보험이 체결되는 것이고, 피보험자의 가족이나 피용자의 물건에 대하여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⁷³⁾ 이러한 취지는 원래 이 규정을 도입하게 된 연원인 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독일 보험계약법 제89조(집합물에 대한 보험) (1) 집합물에 대하여 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물건의 총체에 부속된 물건도 포함된다. (2) 집합물에 대하여 보험이 체결된 경우에는 손해 발생당시 가족공동체 안에서 보험계약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 또는 같은 시점에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고용관계에 있었던 자로서 보험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물건에까지 보험은 확대된다. 이 때 보험은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본다) 제2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상법 제689조는 보통의 가구(家口)나 사업장을 염두에 둔 것이지 본 사안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자가 다수인에게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를 염두에 둔 조항이 아니다.

4. 상법 제639조 관련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외국의 입법례도 그러하다(가령 독일 보험계약법 제43조 제3항: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는 상황에 기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본다⁷⁴⁾).

상법 제639조 제1항 단서에서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를 하지 아니하면 그 타인이 보험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

73) 정동원(집필대표), 주석상법 보험(II)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64쪽 참조

74) Ergibt sich aus den Umständen nicht, dass der Versicherungsvertrag für einen anderen geschlossen werden soll, gilt er als für eigene Rechnung geschlossen.

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보험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그 자를 위한 보험이 성립되었음을 알리는 기회를 주어 도박보험의 위험을 방지하는 동시에 그 타인으로 하여금 피보험자로서의 적정한 행위(가령 손해방지 의무의 이행)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⁷⁵⁾

5. 판례와 종합적 평가

판례에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하는 경우 화재보험을 들었다면 건물부분의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하급심에서 아내가 하는 팬시업에 대해 남편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아내를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그들에게 피보험이익을 귀속시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다.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자신소유의 수십 채의 아파트에 대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가구에 대해서까지 보험을 가입하여줄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타인을 위한 보험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수십 채의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이 보험계약자이며 피보험자로 하여 아파트 및 빌트인 가구에 대하여 보험을 들 때 자신의 소유가구 이외에 복수의 임차인들의 가구까지 보험대상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자신의 소유에 국한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임차인들의 가구손상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독일의 경우 2007년 동 보험계약법 개정시에는 가족공동체 대신 집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진정 또는 부진정 사실혼관계를 포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도 집합보험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업자가 보험에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구까지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본 사안의 경우 보험가입자가 나중에는 임차인들 소유 가재에 대하여도 보험목적물로 가입하였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바, 보험가입시 보험회사 측의 인식 및 설명 등을 확인하여 개별약정인정 또는 약관의 법적 성질론으로서의 의사설의 입장에 따른 확인은 필요하다.

75)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2015, 169쪽.

V. 맺음말

현대사회에서 보험의 기능은 매우 크다. 사회가 복잡하여짐에 따라 여러 가지 사고가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고전적인 사고원인은 화재이다. 실제 아파트에서 오토바이 키가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 있다. 아파트 1층에 세워놓은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겨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되었다. 경찰은 불이 난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건축 여부도 집중 수사해 문제의 아파트와 바로 옆 ○○타운에 비주거용으로 허가받은 10층 오피스텔을 쪼개 원룸으로 임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⁷⁶⁾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 그런데 그 화재보험에 임차인의 가재도구도 부보대상으로서 포함이 되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집합물을 보험에 드는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인정된다. 그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와 일정한 목적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타인을 위한 보험이 인정된다. 즉 가족구성원이어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이거나 사용자와 피용자이면서 같이 주거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진정 또는 비진정 사실혼 관계자도 포함하기 위하여 가족공동체를 집공동체로 용어를 바꾸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처럼 임대사업자가 보험을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구에 대해서까지 타인을 위한 보험을 인정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에도 집합보험이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 임대업자가 보험에 든 경우 임차인의 가재도구까지를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서 인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을 판단의 비교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집합물보험의 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보면 임차인의 가재도구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집합보험은 합리적인 기능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에는 또한 한계도 있다. 그리하여 동 법제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집합보험제도의 연혁 등을 고려하고 비교법적인 이해를 결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합보험법리가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6) 국민일보 2015년 1월 20일자.

참고문헌

- 권오승, 「경제법」, 제9판, 법문사, 2011
- 김성태, 「보험법강론」, 법문사, 2001
- 김은경,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 2016
- 김형배·김규완·김명숙, 「민법학강의」 제12판, 신조사, 2013
- 박세민,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15
-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09
- 신현윤, 「경제법」, 제5전정판, 법문사, 2012
- 양승규, 「보험법」 제5판, 삼지원, 2005
- 유주선, 「보험법」, 청목출판사, 2013
-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제9판, 세창출판사, 2012
- 이기수·최병규·김인현, 「보험·해상법」 제9판, 박영사, 2015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 이필규·최병규·김은경, 「2009년 독일 보험계약법」, 세창출판사, 2009
- 장덕조, 「보험법」, 제2판, 법문사, 2015
- 정동윤(집필대표), 주식상법 보험(Ⅱ) 제2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5
- 정상근, 「보험계약법」, 도서출판 좋은땅, 2006
- 정진욱,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 관한 입법론적 검토,” 「법학논총」 제23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정찬형, 「상법강의(하)」 제17판, 박영사, 2015
- 정호열, 「경제법」, 제4판, 박영사, 2012
-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홍문사, 2009
- 최병규, “보험법상 집합보험에 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제25권 제1호, 2012
- 최기원, 「보험법」 제3판, 박영사, 2002

Bruck/Möller, VVG, 8. Aufl., Berlin, 1961~2002

Honsel(Hrsg.), Berliner Kommentar zum VVG, 1999

Langheid/Wandt, Versicherungsvertragsgesetz, Münchener Kommentar, Bd. 2, München, 2011

Larenz/Wolf,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9. Aufl., München, 2004

Palandt, Bürgerliches Gesetzbuch, 69. Aufl., München, 2010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7. Aufl., München, 2004

Prölss/Marti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28. Aufl., München, 2010

Rüffer/Halbach/Schimikowski, Versicherungsvertragsgesetz, Baden-Baden, 2009

Schimikowski/Brömmelmeyer, Versicherungsvertragsgesetz

Wolf/Lindacher/Pfeiffer, AGB-Recht, 5. Aufl., München, 2009

<Abstract>

Apt lease business, collected things and insurance for the third person

Choi, Byeong Gyu

In modern life, accident can occur because of very small cause. But the result can be very serious. One day, a person has parked his motorcycle in front of a appartement. He tried to pull out the motorcycle key. But it was impossible because of icing. He made fire through lighter. After he left the place, there occurred fire and it has spread to the entire appartement. The fire loss was very serious. The owner of this appartement was rental businessman. He made insurance contract with one insurance company about the fire accident on the appartement. The issue was whether the insurance company should pay insurance money not only on the furnitures of the owner, but also on the furnitures of the appartement tenants. The § 686 Korean commercial code regulates about insurance of collected items. The § 89 German insurance law(VVG) regulates also the similar contents. The regulation is started from family and employment relationship. The German law was revised in the year of 2007. The change of this revision was the change of term(from family member, to house member). But also according to the German law, the tenants can not get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owner. It is clear, when we think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regulation.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we should decide rationally, who is the appropriate insured. According to this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the tenants can not get insurance money from the insurance contract of the appartement-owner. We should apply collected things and insurance benefit rule rationally. Insurance for the third person should be applied only in the case of the rational belongingness.

Key Words : collected item, insurance for the third party, house community, employment relationship, rental business, purpose relevance, tenant furnitures